LINC+사업단 규정 폐지 및 LINC3.0 사업단 규정 제정(안) 검토의견서

정보통신공학과 / 교수 현광민 / 8807

개정안	검토의견
	1) LINC 사업단은 규정 초안을 만들 수 있으나, 의견조회 혹은 공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음. 권한상으로 봤을 때 산학협력단의 행정 처리에 의거 의견조회와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로 판단됨. 2) 교원 등의 보직임기 규정 제 5조 보직의 임기에 의거 제정 규정의 단장 임기는 "사업기간동안"이 아닌 "2년 후 연임"으로 변경해야 함. LINC 사업조건에 규정이 있다면 보직임기규정에 추가 조항을 넣어 이 규정을 먼저 바꾸거나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함. 사업규정에는 바꾸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바꾸지 말라는 의미이므로,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음. 3) 부속시설 설치·운영 규정 제 3조의 별표에 존재하지 않는 부속시설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 질 수 없음. 따라서 먼저 이 규정을 수정한 후, 혹은 같이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.